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
일부개정법률안 (박지혜의원 대표발의)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부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및 산업단지의 신·재생에너지 사용량·보급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·작성하도록 함(안 제25조제1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이 은 정)